

굴착공사 신청 및 이용절차

1 굴착공사 계획 신고



2 접수번호 발급



3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



회합 (공동표시)



표시 (각자표시)

4 굴착공사 개시 통보



5 굴착공사 시행



도시가스, 고압가스, LPG배관망공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.

굴착공사 신고 방법

전화 : 1644-0001
(전국 동일, 연중무휴)

인터넷 : www.eocs.or.kr

APP :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

땅 파기 전 확인하셨나요?



미신고 굴착공사 시 관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구멍뚫기, 말뚝박기, 터파기 등
중장비로 땅 파기 전
전화하세요.

1644-0001

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

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